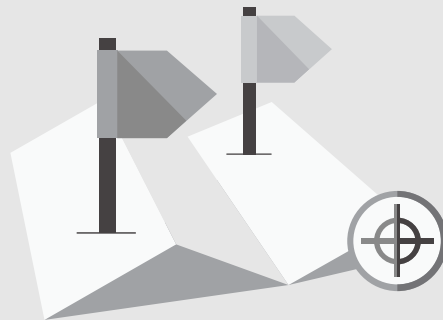


# 이달의 초점

2023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방향



2023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강희정

2023년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김태완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강은나·안수란·이상정·이한나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이소영

2023년 사회보장 분야 정책협의체도의 고찰 및 과제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The 2023 Outlook for Social Service Policy

**강은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수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한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명: 가나다순

윤석열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약자복지의 정책기조 위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성을 토대로,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던 윤석열정부의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대별되는 인구집단별 핵심 사회서비스 정책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일반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되었던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 1. 들어가며

2022년 윤석열정부의 출범 이후, ‘약자복지’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기조로서 제시되었다. 이 글은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과 이를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2023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 사회서비스 대상 영역별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던 핵심정책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과 향후의 과제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먼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이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제로 기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며, 수요·공급의 확대, 혁신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의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아동 영역에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및 ‘가정형 보호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2023년까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보호아동의 단계적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 국정과제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100세 시대 일자리, 지역사회 돌봄,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장기요양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내용 중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핵심 과제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 지원을 비롯한 서비스 이용에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용역연구를 통해 2023년에 실행할 시범사업 모의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예산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 방식의 변화

는 전체 장애인 서비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 사회서비스 정책: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 가.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정과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이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제로 기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여, 수요·공급의 확대, 혁신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의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과제를 크게 구분하면,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공급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로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새 정부도 내용적으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15년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나름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간 정책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고용·건강·문화·주거·환경 분야 서

비스의 필요 대비 이용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 중 실제 이용한 국민의 비율)은 50%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안수란 외, 2021). 돌봄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제도의 확대로 사회서비스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관련된 일자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영세한 개인 사업체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에 의해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공급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던진 ‘사회서비스 혁신’의 화두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의 문제들을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가지

고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022년 6월 18일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함께 가는 행복경제의 기치 아래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복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과 비교하면 내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민간 공급 주체와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면적으로 강조했다. 이 점에서 이질성이 크게 느껴진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협력과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으로 기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1. 현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과제

| 120대 국정과제(2022. 7. 발표)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발표)   |
|--|---|
| <p>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li> <li>- 사회적경제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li> <li>-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전 국민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 체계 강화</li> </ul> </li> <li>•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li> <li>-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공급 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마련</li> </ul> </li> <li>•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li> </ul> | <p>함께 가는 행복경제-복지시스템 고도화: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 다변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및 사회적 금융을 통한 다각적 투자확대 방안 모색</li> <li>-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li> <li>-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양해각서(MOU) 체결</li> </ul> </li> <li>•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li> <li>- 수요자의 지불능력,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li> </ul> </li> <li>• (인프라 보강)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정보 플랫폼 제공,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li> </ul> </li> </ul>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22. 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 관계부처 합동(20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나. 주요 쟁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탁, 바우처, 구매계약 방식 등으로 민간의 비영리·영리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간접 제공하고 민간 부문의 운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한다. <표 1>의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의 주요 내용은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민간에 위임된 사회서비스의 공급구조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운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은 단순히 민간 공급자의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시장은 민간 영리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영리 부문(개인 사업체+회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8.1%에 이르며,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보건복지업에서 영리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6%로 매우 높다.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회서비스 사업체는 71%에 달한다(안수란, 하태정, 2022).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높은 비율에 계속 주목해 온 이유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 문제를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시장화 방식으로 확장된 장기요양과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형의 사회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개인 사업

체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제공기관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세 영리기관이 과도하게 진입하면서 과잉경쟁으로 인한 기관의 부정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는 공급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책으로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진입기준을 완화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간 서비스 품질 격차의 문제는 심화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다수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정부 재정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정부 보조금 수입이 전체 수입의 75%가량을 차지한다(안수란 외, 발간예정). 기관 입장에서는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 합리적인 서비스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때 추가 이용자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서비스 단가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핵심 사회서비스인 돌봄서비스 역시 원가와 노동 강도를 고려한 합리적 가격 책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도 쉽지 않다. 낮은 수익성으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품질 개선을 도모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층이 충분한 구매력을 지닌 일반 국민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가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서비스 이용자를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중산층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화된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지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 인상은 정부 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 즉, 높은 지불능력과 의향이 있는 수요층의 확보와 합리적 가격 책정 및 비용 분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기관의 자생력은 담보하기 어렵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재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 다. 향후 과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의 일차적인 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의 체질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공급자의 혁신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 투자 활성화,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 지원 등 공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기관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을 가로막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과 비용 분담 구조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과 노인에 집중되

어 있었던 서비스 구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여 서비스의 총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공급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매력이 있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잠재수요가 실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 수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시에 조화롭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정책과제들은 모두 필요하고 타당하다. 이미 정책 현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논의되었던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중앙부처의 강한 의지와 부처 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치, 서비스가 실제 집행되고 제공되는 지역사회 내 민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민간 주도 혁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제1항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및 안정된 고용 보장, 국민

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관리·감독·지원,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도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따라서 민간 지원이 사회서비스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험해 왔듯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활성화는 대규모의 공공재정 투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바우처 방식보다는 발굴주의에 기반을 둔 공공의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한 사업화가 적합하다. 시설과 인력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의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의 혜택은 국민이 누려야 한다. 공급체계를 고도화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양적·질적 효과가 낮다면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 3. 아동복지서비스 정책: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 가. 정책 추진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6개국에 가입한 국제협약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2).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이래, 관련 국내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협약의 법적·실천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Jung, 2010, 노혜련, 조소연, 2016, 재인용, p. 225). 한편, 2009년 유엔은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결의하였고 제21조에서 ‘최소 제한 대안 원칙’에 따라 시설양육은 특별히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유익이 되는 때에만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노혜련, 조소연, 2016, p. 227).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설양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보호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아동 탈시설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보호아동 탈시설화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허현덕, 2022).

한편, 2022년 6월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주요 내용에서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의 추진을 포함하여(대한민국 정부, 2022.7)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호아동의 단계적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까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 비율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책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정책 추진 현황

### 1) 대리양육체계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유기, 학대와 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리양육체계가 필요 한데, 가정위탁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0년 5월에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왔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20.5.21.). 예비위탁부모 발굴,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후견인제도 활성화,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가정위탁 기반 확대를 통해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로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36.9%는 가정보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2.5.31.).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양육체계에 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 외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율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2020년 기준, 2016년에 비해 아동양육시설 보호율이 약 1%포인트 감소했지만, 가정위탁 보호율은 더 큰 폭(2.4%포인트)으로 감소했다. 반면,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보호 비율이 3%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율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리·친인척 중심의 가정위탁 비율에도 큰 변화가 없다. 2020년 기준, 전체 9,923명의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일반위탁가정 보호아동은 934명, 9.4%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21). 2016년 7.5%, 2017년 7.8%에 비해, 약 2%포인트 미만의 증가 수준에 머물러 위탁부모 발굴 및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등의 정책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대리양육체계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

표 2. 보호아동 대리 양육 현황

(단위: 명, %)

| 연도   | 보호아동   | 대리양육체계 |      |        |      |        |      |
|------|--------|--------|------|--------|------|--------|------|
|      |        | 아동양육시설 |      | 공동생활가정 |      | 가정위탁   |      |
| 2016 | 28,102 | 12,448 | 44.3 | 2,758  | 9.8  | 12,896 | 45.9 |
| 2017 | 26,459 | 11,665 | 44.1 | 2,811  | 10.6 | 11,983 | 45.3 |
| 2018 | 25,113 | 11,100 | 44.2 | 2,872  | 11.4 | 11,141 | 44.4 |
| 2019 | 23,614 | 10,585 | 44.8 | 2,645  | 11.2 | 10,384 | 44.0 |
| 2020 | 23,400 | 10,351 | 44.2 | 3,126  | 13.4 | 9,923  | 42.4 |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정위탁 보호아동의 접근성이 낮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 비해 디딤씨앗통장, 의료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치료, 자립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자립체험관, 자립생활 멘토링, 장학금,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매우 적었고, 특히 디딤씨앗통장을 모르는 보호아동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3,104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수행된 실태조사에서도 가정위탁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이 보고되었다(이상정 외, 2020).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은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에 있어서 아동양육시설 혹은 공동생활가정과 3~5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고, 디딤씨앗통장, 의료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치료, 자립교육 프로그램, 자립체험관, 자립생활 멘토링, 장학금,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등의 경험에서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0). 이렇게 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위탁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조치가 되기 어렵다.

## 2) 공공 아동보호체계

민간 중심의 파편적·분절적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

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우리나라도 시·군·구가 주축이 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시·군·구에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유기, 부모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가정 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초기상담, 보호배치와 양육 상황 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 책임지고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지원하여 가족이 기능하도록 하고 아동이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형의 가정위탁 보호 조치를 고려하는 것, 보호배치 후 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이 조기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모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국가를 대신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고 있어, 주 35시간 근무하는 1~2년 계약직으로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표 3. 보호대상아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 신규 발생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자립준비청년 | 입양  | 소년·소녀 세대 | 전체     |
|------|-------|---------|-------|--------|-----|----------|--------|
| 2020 | 4,120 | 11,356  | 9,923 | 12,857 | 492 | 6        | 38,754 |

주: \*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년까지 전국에 71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계획대로 모든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종사자 1인당 54명 이상(2020년 기준)의 보호대상아동과 그 가족, 아동보호기관 종사자(위탁부모)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호아동의 가정 외 보호기간은 평균 11~12년으로 매우 긴 편인데(이상정 외, 2019; 이상정 외, 2020),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이러한 업무 환경 속에서는 긴 가정 외 보호기간 동안 지속적·연속적·통합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 다. 주요 쟁점과 과제

##### 1) 가정위탁 중심 서비스 재편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할 만한 환경과 여건을 갖추는 게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 아동보호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바가 없으며, 관련 서비스 또한 여전히 시설보호아동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아동을 가

정위탁 중심으로 보호조치하고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설보호 시 제공되는 다양한 보호 및 자립 관련 서비스들에서 배제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탈시설화 및 가정형 보호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 재편,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예비위탁부모 발굴,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등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보호조치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 보호조치 되었을 때, 적응 및 보호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호과정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아동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시설보호아동 중심으로 개발되어 연령 단계별로 집체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는 방학을 이용한 캠프 형식으로 일부 신청자에게만 제공되어 왔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이렇듯 지금까지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서비스와 프로그

램이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개발, 제공되어 왔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보호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별적·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심으로 재편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제도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심의 위탁가정 지원과 보호아동 사례관리는 물리적 거리 접근성,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이상정 외, 2018). 탈시설화로 인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보호아동의 수가 늘어난다면 사례관리의 누락과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보호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조치부터 연속적 지원과 지역적 접근성,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가족 지원을 고려했을 때,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을 기반으로 한 가정위탁 보호아동 사례관리체계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보강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보호대상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사정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이다. 더욱이 보호아동의 탈시설화가 본격화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에 보

호조치하고, 지역사회에 늘어난 보호아동을 맞춤형으로 관리,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 외 보호아동의 보호기간은 평균 10년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대부분 1~2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고용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5년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보호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동안 담당자가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전문성 축적에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보호아동에게 지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보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상황으로는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올해 연말까지 계획대로 모든 인력이 배치 되더라도 1인당 54명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시·군·구 단위의 다른 통합사례관리체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40~70명 이하를 권장하며, 위기·집중사례 비율이 높으면 대상 아동 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에는 1인당 20가구 내외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22). 위기가도가 매우 높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력이 현실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백 없는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가. 정책 추진 배경

고령화율이 7.2%에 도달한 200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어 왔다. 2022년 기준 노인인구 수는 90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5%이며, 2024년에는 노인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1. 12. 9.). 또한, 인구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의 말형 격인 1955년생이 2020년을 기점으로 65세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2023년에는 약 275만 명이 노인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1. 12. 9.).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연금소득으로 인해 구매력이 있는 새로운 노년층이라는 등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이 노년기 특성 변화를 주도하고, 기존 노년세대와는 다른 수준의 일자리, 돌봄, 교육, 주거,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노인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여가, 노인주거, 노인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중 인구 및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노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의 주요 내용 중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돌봄 현황과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정책 추진 경과

대표적인 노인돌봄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치매노인 지원,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의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약 87만명(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8.7%)이며, 전국적으로 26,536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약 56만명의 장기요양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지역사회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기준 노인맞춤서비스 대상자는 약 50만 명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약 3.3만 명이다(보건복지부, 2022d).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조기 치매 진단과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로는 치매환자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2b).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c). 2020년부터 신규 대상자부터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게이트웨이(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 등이 포함된 디지털돌봄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소방청, 2020. 9. 7.).

위와 같이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각각의 노인돌봄서비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여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낮은 품질, 장기요양기관의 영세성과 장기요양인력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제도적 문제들이 서로 맞물려 장기요

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신뢰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 2020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안부 확인이나 정보 제공 등 단편적인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노인 돌봄,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직성과 지역사회 내 서로 다른 노인돌봄서비스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도 노인돌봄전달체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속에서 노인돌봄과 관련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확대,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의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추진과 통합재가 등의 재가서비스 강화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한 의료-요양 복합 제공,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 개선 등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주요 쟁점과 과제

건강이나 기능 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돌봄정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향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가 중심의 노인돌봄체계가 사회적으로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현 정부에서 노인돌봄의 핵심 방향을 지역사회 계속 거주로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재가 중심의 노인돌봄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노인돌봄의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세부 내용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인돌봄의 중심축을 지역사회와 노인의 거주공간으로 이동시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인생 후반기를 영위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충분성, 다양성, 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 그리고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돌봄군은

한 달 평균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16~4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sup>1)</sup> 장기요양서비스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차지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 평균 3~4시간, 한 달 평균 15~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시간으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재가 노인돌봄서비스 시간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서비스 시간이나 종류가 많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재가서비스보다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기이한 연속적 노인돌봄 이용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노인돌봄의 연속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건강 상태, 기능 상태, 돌봄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삶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가져오고, 각기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노인들의 돌봄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한두 가지 서비스 이용으로는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부확인이나 가사 지원 중심의 단편적인 재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1)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이며,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큰 대상으로 정의된다.

식사(치료식 포함) 지원, 병원 동행이나 외출 동행, 물품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노인돌봄 안에서 개발되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기술, 스마트홈 기술 등 다양한 돌봄기술을 접목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응급 대응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충분성·다양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대상 노인이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공급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노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공급되고 있다. 주로 저녁이나 야간, 이른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 등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없는 경우 노인돌봄의 사각지대로 남겨지게 된다. 이러한 돌봄공백의 발생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아닌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돌봄서비스의 개편은 충분성과 다양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

화와 함께 설계되어야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돌봄 욕구는 보건의료 욕구와 맞물려 있으며,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책 목표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돌봄과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노인성질환의료 지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등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노인의 재가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입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 장애인 정책: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가. 정책 추진 배경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원년으로, 향후 5년간 중앙부처에서 책

임지고 시행하는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다. 그러나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제6차 종합계획은 공식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새해의 장애인 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전망하고자 한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모델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을 장애인 정책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한 ‘개인예산제 도입’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시범사업 모의적용을 앞두고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기존 제도의 확대와 내실화에 가까운 타 과제보다 장애인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달해 온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sup>2)</sup>는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평가에 기초하여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예산을 할당하고 이용자가 자기주도

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이용자 선택권을 극대화한 제도이다(이하나 외, 2021, p. 12). 국가와 시기에 따라 제도의 형태가 다양하나, 활동 지원과 같은 돌봄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할당한 예산의 수령 방식이나 돌봄제 공인력의 고용 방식이 다양하여 이용자가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중반 돌봄서비스의 제도화 요구와 국외의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돌봄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돌봄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 지원 방식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2000년대에 매우 신선한 정보였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형식적 수준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구현하였으나, 2011년 활동지원제도로 명칭과 체계를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가 시행 초기 1만 4천 명에서 2022년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9.; 보건복지부, 2022),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부모 상담 등으로 바우처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에도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보장범위의 협소함, 급여 수준의 불충분성, 수급 불균형과 제

2)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라는 용어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이전의 다양한 제도를 아울러 부르는 용어로 발전하여, 실제 제도의 명칭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급여의 범위나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의 선택과 통제에 중점을 둔 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인예산제로 분류하나, 특정 제도의 개인예산제 간주 여부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공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비스의 분절성은 '자기주도적이면서 유연한 서비스 이용'의 장벽이며, 개인예산의 원리를 부분적으로만 구현한 현행 바우처제도로는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예산제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운영모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지속되고 관련 연구가 축적되던 중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개인예산제를 공약하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학계와 일부 민간의 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개인예산제의 추진은 본격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나. 정책 추진 경과

현 정부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개인예산제를 명시적으로 추진한 바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에서 개인예산제의 핵심 가치인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를 표방하며 서비스의 통합이나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정산기간 완화 등 개인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하거나(조윤화 외, 2016), 2018년에 시행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변경 시범사업에서 복지부 소관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이용 유연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개인예산제에 가장 빠른 관심을 보인 곳은 서울특별시로, 2017년에 '자기주도지원예산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최한별, 2017. 10. 19.). 당시 실제 시범사업의 시행은 무산되었으나, 이후 수차례 용역연구를 수행하며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다시금 준비하고 있다.

개인예산제의 실험적 시도는 민간 영역의 실천 현장에서 두드러져, 2010년 중반 이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윤재영, 2016, 2017; 김동홍, 2022; 김종훈, 2022). 이들은 기관마다 형태가 다르고 대부분 기존의 활동 지원 급여 외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국외 제도나 본래 개인예산제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으나, 자기주도적 예산 사용 경험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져온 성과를 보고하여 개인예산제의 도입 타당성을 지지하였다(윤재영, 2016, 2017; 김동홍, 2022).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예산제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공약으로 발표하며 장애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떠올랐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후 개인예산제와 관련하여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 국회로, 새 정부 출범 이전인 2022년 4월에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과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이 각각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치권과 장애계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포함되었고, 2022년 11월 말에는 2023년 하반기로 예정한

1단계 시범사업의 모의적용(2024년 하반기 본격 용)을 위한 모델 개발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 주요 쟁점**

개인예산제는 관계자의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는 사안 중 하나이다.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 측이 바우처 간 칸막이 해소를 골자로 하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을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서비스의 불충분성과 장애인 당사자가 급여량 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이라며 개인예산제 공약을 비판하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1. 21.). 2017년 서울시에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였을 때에도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최한별, 2017. 10. 19.).

반면 개인예산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개인예산

제의 본래 취지와 기대 성과에 집중한다. 현 제도의 취약함은 개인예산제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특히 장애인 서비스 총량의 확대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서비스의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공공 영역이 서비스의 직접 제공이 아닌, 자원의 합리적 할당을 위한 체계의 정비와 서비스 품질의 관리 감독,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책무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예산제의 지지자들은 개인예산제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설계와 운영상에서의 쟁점을 제시한다. 개인예산제의 설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급여의 범위이다. 현재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급여의 개인예산 포함 여부도 개인예산제의 취지와 실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나, 민간 영역의 서비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외 제도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금 급여와 돌봄제공인력의 직접 고용을 허용할 것인

**표 4. 개인예산제의 쟁점**

| 구분   |                            | 쟁점  |
|------|----------------------------|---|
| 급여   | 급여 범위<br>(개인예산의<br>용도와 용처) | - 공공서비스 포괄 범위: 복지부, 타 부처,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포함 여부<br>- 현재 공공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서비스(시장 기반 서비스 등)의 포함 여부<br>- 돌봄제공인력의 직접 고용                                      |
|      | 급여 유형                      | - 현금 급여 허용 여부   |
| 전달체계 |                            | - (인프라 확충) 개인예산제 이용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구축과 수급 불균형의 해소<br>- (공공의 역량과 책무성) 장애인의 욕구를 평가하여 예산 총량을 할당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승인할 공공 영역의 역량과 책무성 강화 |
| 재원   |                            | - 기존 예산 항목의 통합 또는 목적 외 사용, 또는 신규 항목의 신설을 통한 합당한 예산 지출   |

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전달체계와 관련한 쟁점은 개인예산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과 관련된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한데, 현재 한국 사회는 이용자 지원조직의 규모나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자원의 할당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공의 역량과 책무성의 강화 방안도 주요한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서비스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방식은 독립적 예산으로 편성된 집행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예산 항목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개인예산을 위한 신규 예산 항목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향후 전망과 과제

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에 모의적용을 거쳐 2024년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상세한 운영 모형은 2023년 상반기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주권 강화라는 개인예산제의 본래적 취지 실현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성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 개인예산제는 백지 상태에서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각각의 취지와 전달체계가 있는 여러 제도를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통합·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의 난도가 매우 높다.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 of 증진이라는 핵심 성과를 중점에 두고 급여 유형과 범위,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서비스는 예산 지원 대상에 따라 크게 제공기관 지원 방식(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 지원 방식(바우처 서비스)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 지지자 중 현재 제공기관 지원 방식의 일부를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예산의 급여 범위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일부 서비스는 개인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예산은 서비스 이용의 성격이 '구매'임을 전제하고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할 수 없거나 구매할 수 없는 서비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례로 학대나 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개인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비스 성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개인예산제와 함께 장애인 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서비스 총량을 확대해 나

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개인예산제에 대한 반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는 개인예산제가 무의미하거나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가까우며, 여기에는 장애인 서비스 총량의 확대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의 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 개인예산제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서비스의 확보 없이는 개인예산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 입장을 가진 주체와 상시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나가며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영역별로 제기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영역 국정과제는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의 고도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민간에 위임된 사회서비스의 공급구조 개선에 그 핵심이 있다. 이는 민간 투자 활성화,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 지원 등 공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공급기관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재정 지원과 비용 분담 구조의 다각화, 서비

스 공급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관리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중앙부처의 강한 의지와 부처 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서비스가 실제 집행되고 제공되는 지역사회 내 민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는 윤석열정부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아동의 시설양육은 아동보호의 가장 마지막 대안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탈시설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정위탁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만한 환경과 여건을 갖추는 게 전제 조건이며, 가정위탁 보호 아동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재편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보호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위해서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기반 가정위탁 보호아동 사례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상황으로 보호아동 탈시설화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는 보호아동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핵심 정

책과제로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돌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돌봄재정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의 충분성과 서비스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재평가 및 돌봄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와 노인돌봄의 보장성 강화는 노인돌봄재정의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인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재정적 안정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를 통해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중증화를 지연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개인예산제의 도입은 활동 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등 바우처 서비스 간 칸막이를 해소, 통합바우처로 운영하여 유연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뉘는 제도로 장애인 서비스의 불충분성과 급여량 판정에서의 자기주도성이 결여된 현재의 상황에서 서비스 간 칸막이의 해소, 선택권 보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 장애인 서비스의 총량 확대는 개인예산

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며, 자원의 합리적 할당을 위한 체계의 정비 및 서비스 품질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모의적용을 거쳐 2024년에 개인예산제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주권 강화라는 개인예산제의 본래적 취지 실현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의 증진이라는 핵심 성과에 중점을 두고 급여 유형과 범위,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inkSeq=1000633410&lsId=005050&print=print>에서 2022. 11. 27.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9.).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세종: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2019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원주: 국민건

- 강보험공단.
- 김동홍.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동문장애인복지관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85-93.
- 김중훈. (2022).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바라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73-79.
- 노혜련, 조소연. (2016). 원가정 지원 원칙: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과 권리*, 20(2), 223-255.
- 대한민국정부. (2022. 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서울: 대한민국정부.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22). **2022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d).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2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에서 2022. 11. 30. 인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20.5.21.).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3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37)에서 2022. 11. 26. 인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2.5.31.).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97>에서 2022. 11. 26. 인출.
- 보건복지부, 소방청. (2020. 9. 7.).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10만대 보급.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9781](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9781)에서 2022. 11. 30.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6&cntntsId=1148>에서 2022. 11. 21. 인출.
- 안수란, 이주민, 서윤경, 김유희, 어유경, 정세정, 박세경. (2021).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 하태정, 엄다원, 김희성, 김유희, 어유경. (발간 예정).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 하태정. (202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

- 업적·직업적 특성 변화. **보건복지 Issue&focus**, 제431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재영. (2016). 사람중심지원서비스 실천의 성과와 과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CIL+ 사업을 중심으로. pp. 1-27. In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 **사람중심계획과 발달장애 서포트 서비스의 실천, 그리고 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장애인자립생활 모델연구·개발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보고회 자료집.**
- 윤재영. (2017). 성공적인 사람중심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들 -서비스의 질을 담아내는 핵심성공지표. pp.29-46. In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 **성공적인 사람중심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들 -서비스의 질을 담아내는 핵심 성공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장애인자립생활모델연구·개발지원사업 3차 연도 성과보고회 자료집.**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2020).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임정미, 이주연, 노혜련, 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하나, 하태정, 어유경, 김동기, 신권철, 최복천. (2021).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1. 21.). 국민 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자의 장애인정책 공약은 “깡통 다섯 개 선물세트”다. 성명서. [http://sadd.or.kr/index.php?\\_filter=search&mid=data&search\\_keyword=%EA%B0%9C%EC%9D%B8%EC%98%88%EC%82%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6690](http://sadd.or.kr/index.php?_filter=search&mid=data&search_keyword=%EA%B0%9C%EC%9D%B8%EC%98%88%EC%82%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6690)에서 2022. 5. 10. 인출.
- 조운화, 이동석, 김용진, 김영미, 송기호, 정수연. (2016).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최한별. (2017. 10. 19.). 서비스 공공성 확보 없이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을 준다고? ‘우려’ 빚발쳐.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에서 2022. 11. 30. 인출.
- 통계청. (2021. 12. 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5453](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5453)에서 2022. 4. 6. 인출 .
- 허현덕. (2022. 1.28) 시설 아닌 집으로, ‘지금 바로’ 아동 탈시설.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6>에서 2022. 11. 21. 인출.
- Jung, J. K. (2010). Acceptance of CRC on the domestic law and practice arena in Korea's child welfare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4(2), 219-244.

# The 2023 Outlook for Social Service Policy

**Kang, Eun-Na**

**Ahn, Suran**

**Lee, Sang-Jeong**

**Lee, Hanna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ince its inauguration in 2022,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policy of innovating private sector-led social services under the principle “welfare for the weak.”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spects and main task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social policy, focusing on the national agenda items. This article addresses the background and progress in population-group-specific social service policies for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lso, the paper discusses key policy tasks and significant issues to improve social service policies in Korea.